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8. 2.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7조와 각 개별법령의 위임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요율이 일부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 이를 각 법령 등에 부합시키는 한편 그 요율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안으로 조정하여 수수료 징수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도모함으로써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현행수수료 요율 150항목 조정(안 제3조제1항)

- 개별법령에 수수료 요율이 직접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에 징수 근거가 불명확한 128개 항목을 삭제함
-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게 위임된 23개 항목을 신규로 추가하고, 수수료 징수가 정당한 21개 항목은 존치시켜 총 44개 항목으로 조정함

나. 존치 21개 항목 중 20개 항목 요율 인상(안 제3조제1항)

- 존치된 21개 항목 중 1건은 동결하고 21개 항목은 인상함
- 인상된 항목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원가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표준안 제안금액을 반영한 것으로 이 중 14개 항목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행자부령을 반영한 것임

다. 정보공개수수료 요율 신설(안 제3조제2항)

- 공공기관의 정보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이용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라. 적용기한 만료 조항 삭제(안 제3조의2)

마 . 수수료 감면대상자 확대(안 제7조)

-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국민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외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등록된 자 등으로 확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실시

▷ 1차(2007. 11. 23 ~ 12. 13) 실시 결과

○ 차고지 설치확인 수수료 조정 요청

- 타시군과 균형을 고려하여 2만원에서 6천원으로 조정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수수료 조정 요청

- 통일안 적용 오류 조정 3만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

○ 정보공개 수수료 조항 추가요청

- 조항 추가 후 2차 입법예고 실시

▷ 2차(2007. 12. 21 ~ 2008. 1. 10) 실시 결과, 의견 없음.

라. 기 타 : 평창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2007. 11. 14)

▷ 석유판매(대리점)등록 수수료 조항 삭제 외 원안 가결

마. 참고자료 :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조정안(별첨)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수수료의 금액) ①제증명등의 수수료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정보공개수수료의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를 적용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기납부수수료의 불반환□을 □수수료의 반환□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다만,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결정·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결정·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라.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참전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결정·등록된 자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제3조 관련)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1. 기획감사실 소관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등) 신고	1건	30,000원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1건	50,000원	
○공장등록 증명	1통	1,000원	
○공업입지기준 확인신청	1통	1,000원	
2. 민원봉사과 소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년도별)	800원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중개사)	1건	20,000원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법인)	1건	30,000원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20,000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1건	10,000원	
○차고지 설치확인	1건	6,000원	
3. 재무과 소관			
○지방세납세증명	1통	800원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	1통	800원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통	800원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통	800원	
○국유(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신규)	1건	10,000원	
○국유(공유)재산의 대부 신청(계속)	1건	5,000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4. 문화관광과 소관	1건	30,000원	
○공연장 등록	1건	20,000원	
○공연장 변경등록	1건	10,000원	
○유통관련업 등록(영화,음반,비디오,게임)	1건	30,000원	
○유통관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영화,음반,비디오,게임)	1건	20,000원	
○유통관련업 신고(영화,음반,비디오,게임)	1건	30,000원	
○유통관련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영화,음반,비디오,게임)	1건	20,000원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1건	20,000원	
○영화상영관 변경 등록신청	1건	10,000원	
○유원시설업 허가신청	1건	50,000원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30,000원	
5. 건설과 소관			
○건설기계저당등록(말소) 신청	1건	1,000원	
6. 지역도시과 소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필지	1,000원 칼라 1,500원	
7. 스포츠사업단 소관			
○체육시설업 신고,등록	1건	30,000원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등록	1건	10,000원	
8. 보건사업과 소관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40,000원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40,000원	
○치과기공소 인정	1건	30,000원	
○안경업소 개설등록	1건	30,000원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건	30,000원	
9. 축산과 소관			
○수산물가공업 등록	1건	10,000원	
○어업신고	1건	1,000원	
○어업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1건	1,000원	
○어업폐지 신고	1건	1,000원	
○내수면 어업면허(복합)	1건	20,000원	
○내수면어업 허가	1건	10,000원	
○내수면어업면허 연장 허가신청	1건	10,000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요율)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율은 별표1과 별표2, 별표3과 같다.</p> <p><신 설></p> <p>제3조의2(국민체육진흥광고물설치허가 수수료)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제7조의2규정에 의하여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광고주를 대리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는 경우 광고대행 수수료액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설치허가 기간중 광고물 내용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생략)</p> <p>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생략)</p> <p>1.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p>	<p>제3조(수수료의 금액) ①제증명등의 수수료 금액은 별표1과 같다.</p> <p>②정보공개수수료의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를 적용한다.</p> <p><삭 제></p> <p>제6조(수수료의 반환) (현행과 같음)</p> <p>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현행과 같음)</p> <p>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다만,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p>

현행	개정안
<p>②(생략)</p>	<p>나. 「<u>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u>」 제6조에 의하여 결정·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p> <p>다.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6조에 의하여 결정·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p> <p>라. 「<u>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u>」 제5조에 의한 참전유공자</p> <p>마. 「<u>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u>」 제4조에 의하여 결정·등록된 자</p> <p>②(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
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
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생략)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③(생략)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310호)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제2조 관련)

종 류	금 액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필지당 800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개별 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주택당 800원

종 류	금 액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 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주택당 800원
「지방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납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	1건당 800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수수료	1건당 5,000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연장) 신청수수료	1건당 3,000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 증명수수료	1통당 1,0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수수료	1건당 20,0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수수료	1건당 30,000원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수수료	1건당 40,000원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수수료	1건당 20,000원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수수료	1건당 100,000원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수수료	1건당 4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수수료	1건당 3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변경신고수수료	1건당 10,000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비용부담)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별 표]

수수료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열람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카드 등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청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공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영화필름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	○열람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사진필름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1컷 :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복제 -1건(1MB 기준)1회 : 200원 -1MB 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참고 자료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조정안 (제3조 관련)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조정전	조정후	
1. 기획감사실 소관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등) 신고	1건	500원	30,000원	가격조정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1건	500원	50,000원	가격조정
○공장등록 증명	1통	300원	1,000원	통일규정
○공업입지기준 확인신청	1통	1,000원	1,000원	동결
2. 민원봉사과 소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급	1필지	300원	800원	신규,통일규정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중개사)	1건	5,000원	20,000원	통일규정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법인)	1건	10,000원	30,000원	통일규정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5,000원	20,000원	가격조정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1건	-	10,000원	신규
○차고지 설치확인	1건	-	20,000원	신규
3. 재무과 소관				
○지방세납세증명	1통	400원	800원	통일규정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	1통	400원	800원	통일규정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통	400원	800원	통일규정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통	400원	800원	통일규정
○국유(공유)재산의 대부신청(신규)	1건	500원	10,000원	조정,통일규정
○국유(공유)재산의 대부신청(계속)	1건	300원	10,000원	조정,통일규정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조정전	조정후	
4. 문화관광과 소관				
○공연장 등록	1건	-	20,000원	신규
○공연장 변경등록	1건	-	10,000원	신규
○유통관련업 등록(영화,음반,비디오,게임)	1건	20,000원	30,000원	가격조정
○유통관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영화,음반,비디오,게임)	1건	5,000원	20,000원	가격조정
○유통관련업 신고(영화,음반,비디오,게임)	1건	20,000원	30,000원	가격조정
○유통관련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영화,음반,비디오,게임)	1건	5,000원	20,000원	가격조정
○영화상영권 등록신청	1건	-	20,000원	신규
○영화상영권 변경 등록신청	1건	-	10,000원	신규
○유원시설업 허가신청	1건	-	50,000원	신규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	30,000원	신규
5. 건설과 소관				
○건설기계저당등록(말소) 신청	1건	-	1,000원	신규
6. 지역도시과 소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필지	-	1,000원 칼라	신규
		-	1,500원	신규
7. 스포츠사업단 소관				
○체육시설업 신고	1건	-	30,000원	신규,통일규정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	10,000원	신규,통일규정
8. 보건사업과 소관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조정전	조정후	
○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20,000원	40,000원	조정,통일규정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0원	40,000원	조정,통일규정
○치과기공소 인정	1건	20,000원	30,000원	가격조정
○안경업소 개설등록	1건	-	30,000원	신규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건	-	30,000원	신규
9. 축산과 소관				
○수산물가공업 등록	1건	-	10,000원	신규
○어업신고	1건	-	1,000원	신규
○어업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1건	-	1,000원	신규
○어업폐지 신고	1건	-	1,000원	신규
○내수면 어업면허(복합)	1건	-	20,000원	신규
○내수면어업 허가	1건	-	10,000원	신규
○내수면어업면허 연장 허가신청	1건	-	10,000원	신규

【참고 자료2】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조정 현황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증명)			
1. 인감에 관한 증명			
○ 인감증명	1통	300원	〈삭제〉
○ 인감의 개인신고	1건	200원	〈삭제〉
2. 병적에 관한 증명			
○ 병적증명	1통	200원	〈삭제〉
3. 본적, 주소, 신상에 관한 증명			
○ 신원	1통	200원	〈삭제〉
○ 사망, 실종	1통	200원	〈삭제〉
○ 동일인	1통	200원	〈삭제〉
○ 거주지	1통	200원	〈삭제〉
○ 전 거주 퇴거지	1통	200원	〈삭제〉
○ 결혼사실	1통	200원	〈삭제〉
○ 부양사실 증명	1통	300원	〈삭제〉
4. <삭제>			
5. 영업에 관한 증명			
○ 영업주	1통	500원	〈삭제〉
○ 중소기업자	1통	500원	〈삭제〉
○ 광업, 공업, 상업	1통	500원	〈삭제〉
○ 농가, 비농가	1통	200원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 납세필 및 등록필	1통	300원	〈삭제〉
○ 생산실적	1통	300원	〈삭제〉
○ 수출실적	1통	300원	〈삭제〉
○ 납품실적	1통	300원	〈삭제〉
○ 건물사용	1통	300원	〈삭제〉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공장원료 수요	1통	300원	<삭제>
○ 분배농지 상환완료	1통	300원	<삭제>
○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	1통	300원	<삭제>
○ 공장등록 증명	1통	300원	<조정>
○ 실수요자 증명	1통	300원	<삭제>
○ 원자재(시설재, 공업요소) 소요량 증명			
- 가 소요량	1통	3,000원	<삭제>
- 확정 소요량	1통	1,000원	<삭제>
○ 시설보유 증명	1통	300원	<삭제>
○ (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 사실증명	1통	300원	<삭제>
○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증명	1통	500원	<삭제>
9.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 행정구역 명칭변경	1통	300원	<삭제>
○ 미분배 농지	1통	300원	<삭제>
○ 공부의 등·초본			
- 대장문서	1통	300원	<삭제>
- 건물도면	1통	300원	<삭제>
- 토지도면	1통	300원	<삭제>
○ 공부열람			
- 기본료	1시간당	100원	<삭제>
- 초과료	10분당	100원	<삭제>
○ 공부부분 열람			
○ 인,허가 등록지정 등의 대장열람	1건	100원	<삭제>
10.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	1필지	5,000원	<삭제>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도면의 등본 교부	1필지	300원	<삭제>
○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1필지	400원	<삭제>
○ 환지예정지 분할	1필지	300원	<삭제>
○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분할	1필지	300원	<삭제>
○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1필지	300원	<삭제>
○ 체비지 분할신청	1필지	300원	<삭제>
○ 토지대금 완납증명	1건	300원	<삭제>
○ 표준주택 설계도면	1필지	1,500원	<삭제>
○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증명	1필지	300원	<삭제>
11. 지방세에 관한 증명<개정 2000.12.30>			
○ 세목별 납세증명	1통	400원	<조정>
○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비)과세증명	1통	400원	<조정>
○ 세목별 과세증명	1통	400원	<삭제>
○ 징수 유예증명	1통	400원	<삭제>
11-1. 주택가격에 관한 확인<신설 2005.10.7>			
○ 개별주택 가격확인서	1통	400원	<조정>
○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1통	400원	<조정>
12. 회계에 관한 증명			
○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1통	300원	<삭제>
○ 하자보증금납부(예치) 증명	1통	300원	<삭제>
○ 원천징수 공제증명	1통	300원	<삭제>
○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확인원	1통	300원	<삭제>
○ 납품 또는 공사 사실증명	1통	300원	<삭제>
○ 보상금 지불증명	1통	300원	<삭제>
○ 면세용도 물품증명	1통	300원	<삭제>
12-1. 삭제<2006.7.7>			
13. 자동차 등에 관한 증명			
○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1통	1,000원	<삭제>
○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	1통	300원	<삭제>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청과시장 경매사임면 승인신청	1건	1,000원	<삭제>
○ 석유 판매업 신고	1건	500원	<조정>
○ 연탄 판매업 등록신청	1건	500원	<삭제>
5. 산림관계			
○ 임목등록 및 변경 등록신청	1건	500원	<삭제>
○ 개간 허가증 교부	1건	500원	<삭제>
6. 건설관계			
○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 신청	1건	1,000원	<삭제>
○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점용허가	1건	1,000원	<삭제>
○ 공작물등 설치목적의 공유수면점용허가	1건	허가자의 공사비의 1000분의 1	<삭제>
○ 토석·사력등 공유수면 산출의 채취허가	1건	점용료의 100분의 1	<삭제>
○ 기타 공유수면의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 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허가	1건	점용료의 1000분의 1	<삭제>
○ 하천(공유수면) 점용(물량증가, 명의변경) 변경허가	1건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000분의 1	<삭제>
○ 하천(공유수면) 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500원	<삭제>
○ 재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점용허가 개설신고	1건	1,000원	<삭제>
○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1건	1,000원	<삭제>
○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이하의 배	척당	500원	<삭제>
-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척당	900원	<삭제>
-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척당	1,300원	<삭제>
-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2,100원	<삭제>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2. 보건사회관계			
○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명칭, 구조이전) 변경신고	1건	10,000원	<조정>
○ 의료기관의 재개업신고	1건	1,000원	<삭제>
○ 약국재개업신고	1건	1,000원	<삭제>
○ 마약구입서 용지교부신청	1건	500원	<삭제>
○ 이·미용사 신고필증 재교부	1건	500원	<삭제>
○ 이·미용 영업소의 명칭 등의 변경신고	1건	500원	<삭제>
○ 공중목욕탕 명칭 변경신고	1건	500원	<삭제>
○ 공중목욕탕 영업허가증 재교부	1건	500원	<삭제>
○ 숙박업 영업허가증 재교부	1건	500원	<삭제>
○ 유료직업 직업소개사업허가 및 변경 허가 신청	1건	500원	<삭제>
○ 의례식장 등 영업의 양수 또는 상속신고	1건	500원	<삭제>
○ 시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1건	500원	<삭제>
○ 묘지 개장허가	1건	500원	<삭제>
○ 시체운반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1건	500원	<삭제>
○ 치과기공소 인정	1건	20,000원	<조정>
○ 안경기공소 인정	1건	15,000원	<삭제>
○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개설신고	1건	20,000원	<조정>
○ 부속의료기관개설허가	1건	20,000원	<삭제>
○ 의료기관신고필증 재교부	1건	2,000원	<삭제>
○ 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0,000원	<삭제>
3. 농수산관계	1건	500원	<삭제>
○ 축사표준 설계도서 발급신청	1매	200원	<삭제>
○ 가축 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500원	<삭제>
4.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 공업입지 지정승인	1건	1,000원	<조정>
○ 전기보안 담당자 대행승인	1건	1,000원	<삭제>
○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	1건	500원	<삭제>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경력(운전, 무사고)증명	1통	500원	<삭제>
14. 주택에 관한 증명			
○ 철거 사실증명	1통	300원	<삭제>
○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통	300원	<삭제>
15. 기타 제증명			
○ 수산업에 관한 증명	1통	300원	<삭제>
○ 화재증명	1통	500원	<삭제>
○ 소방시설 완비증명	1통	500원	<삭제>
○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매	300원	<삭제>
	초과1매당	100원	<삭제>
16. 채무 불이행자 명부 열람·증명			
○ 열람	1건	300원	<삭제>
○ 등사	1건	300원	<삭제>
○ 정본 및 등본	5장까지	300원	<삭제>
	초과1장당	30원	<삭제>
○ 초본	1건	300원	<삭제>
○ 증명서	1건	300원	<삭제>
17.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청구	1건	600원	<삭제>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 관계			
○ 행정서사업 허가신청	1건	1,000원	<삭제>
○ 행정서사 영업허가증 재교부 신청	1건	500원	<삭제>
○ 공유재산 대부신청	1건	신규 500원	<조정>
		계속 300원	<조정>
○ 토지등급설정 심사청구 신청	1건	500원	<삭제>
○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1건	50원	<삭제>
○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500원	<삭제>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	1건	1,000원	<삭제>
○ 건축사 신상변동사항 신고	1건	500원	<삭제>
○ 공영주택의 양수, 양도 등 승인신청	1건	500원	<삭제>
○ 공(시)영주택(증,개축)승인 신청	1건	500원	<삭제>
○ 도시계획사업허가 신청	1건	1,000원	<삭제>
○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	1건	500원	<삭제>
○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1건	500원	<삭제>
○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 변경)	1건	500원	<삭제>
○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500원	<삭제>
○ 권리변경(재개발지구) 행위허가 신청	1건	500원	<삭제>
○ 부동산중개업자 등록(중개업자), 분사무소 설치	1건	5,000원	<조정>
○ 부동산중개업자 등록(법인)	1건	10,000원	<조정>
7. 문화공보 관계			
○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청	1건	500원	<삭제>
○ 출판사, 인쇄소 등록사항 변경	1건	300원	<삭제>
○ 청소년게임장, 복합 유통·제공업자			
- 등록(신고)	1건	20,000원	<조정>
-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1건	5,000원	<조정>
○ 비디오·게임물 판매대여업 등록			
- 등록(신고)	1건	2,000원	<조정>
-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1건	1,000원	<조정>
○ 비디오물 감상실업자, 소극장업자·그 밖의 비디오 시청 제공업자			
- 등록(신고)	1건	20,000원	<조정>
-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1건	5,000원	<조정>
○ 일반게임제공업자, 노래연습장업자, 복합유통·제공업자			
- 등록(신고)	1건	20,000원	<조정>
-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1건	5,000원	<조정>